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가단34102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청구의 소
원 고 A종중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정지옥, 박영재, 마준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형, 박근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혜선
피 고 B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김준석, 전재기, 장성경, 남동환
변 론 종 결 2019. 9. 26.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2. 23.
접수 제67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2001. 2. 23. 접수 제6754호 및
2006. 3. 21. 접수 제1750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2. 23.
접수 제67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2001. 2. 23. 접수 제6754호 및
2006. 3. 21. 접수 제1750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2. 23.
접수 제67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2001. 2. 23. 접수 제6754호
및 2006. 3. 21. 접수 제1750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라.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번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2. 23.
접수 제67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2001. 2. 23. 접수 제6754호 및
2006. 3. 21. 접수 제1750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마.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번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2. 23.
접수 제6753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2001. 2. 23. 접수 제6755호 및
2006. 3. 21. 접수 제17503호로 마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목록 기재 순

번 1 내지 4번 기재 각 토지는 1981. 12. 24.경, 별지 목록 기재 5번 토지는 1981. 6. 22.경 각 'C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피고의 대표자였던 D은 2001. 2. 23.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C종중'을 현재의 피고 명칭인 'B종회'로 정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마쳤고, 또한 2001. 2. 23. 및 2006. 3. 21.경 각 사무소 및 주사무소 이전을 원인으로 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위 각 등기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 종중의 성립 및 유래

1) 원고는 E씨 7세 F의 제6자 G의 후손들로서, H파 중 I의 1자 J를 공동시조로 하여 원주시 K리(이하 'K리'라고만 칭하기도 한다)를 중심으로 그 지방 일대를 대대로 거주하며 성립한 종중이다.

2) L의 장인으로서 E씨 13세인 M은 N 때 O으로 1자 P, 2자 Q, 3자 R과 함께 옥사하였고, P의 1자 I, 2자 S, 3자 T, Q의 독자 U만 살아남았으며, 위 I은 1자 J, 2자 Q, 3자 V을 두었다.

3) 그 후 W으로 M 일가가 신원되어 M에게 X의 시호가 내려지고 경기 양주군에 있던 M의 분묘가 원주시 K리로 이장됨에 따라 그 후손인 P, Y 등의 분묘도 K리에 조성되었고, J의 분묘는 K리에 인접한 원주시 Z리에 조성되었다.

4) 1982년과 1984년경에 각 발행된 E씨세사에는, E씨 7세 F의 제6자 G의 후손을 'H파'라고 칭한다고 하면서, 위 H파에서 분파된 종중에 대하여는, I이 1자 J, 2자 Q, 3자 V과 여덟 명의 딸을 두었는데, 13세 AA(M)의 묘소와 사우가 K리에 모셔져 있어 제

1자 J의 후손이 일찍부터 K리를 중심으로 그 지방 일대에 세거함으로써 'A종중(속칭 AB씨)'이 되었고, 위 I의 2자 Q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은 AC종중이 되었으며, I의 3자 V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은 AD종중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6, 9,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이하 같음), 을 1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인 'C종중'은 원고와 동일한 종중이고, 원고 종중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전부터 실재하였는데, J의 후손들은 1996. 1.29. 종중 명칭을 'A종중'으로 하고, 종원의 자격은 J의 자손으로서 세대를 구성한 기혼남자로 하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성문화한 뒤, 2002. 12. 1. 총회 의결을 통해 J종약계와 AB종약계까지 통합하여 종중의 명칭을 위와 같이 통일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를 경정하고 주사무소 표시를 변경하는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며, 가사 피고의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C종중'이 동일한 종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고 일을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을 하여 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변경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위 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0485 판결 참조).

나.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존등기의 소유 명의자로 기재되었던 'C종중'과 동일한 종중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조선 W으로 E씨 13세 M 일가가 신원되어 M에게 X의 시호가 내려지고 경기 양주군에 있던 M의 분묘가 원주시 AE로 이장됨에 따라 그 후손인 P, Y 등의 분

묘도 K리에 조성되었고, J의 분묘는 K리에 인접한 원주시 Z리에 조성된 사실, M의 묘소와 사우가 원주시 AE에 설치되자, M의 장손인 15세 I의 1자인 J의 후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인 K리 및 인접한 Z리를 중심으로 세거하면서 J를 공동시조로 하는 원고 종중을 형성한 사실, 원고 종중은 1996. 1. 29. 종중 명칭을 'A 종중'으로 하고, 종원의 자격은 J의 자손으로서 세대를 구성한 기혼남자로 하는 내용의 종중 규약을 성문화한 뒤, 2002. 12. 1. 총회 결의를 통해 원주시 Z리에 있는 J의 묘소 관리와 그 봉제사를 위해 조직한 J종약계를 통합한 사실은 각 앞서 살펴보았거나, 갑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12 내지 16호증, 을 2, 10,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가 아닌 V의 후손으로 구성된 AD종중 또는 위 각 종중을 아우르는 상위 종중이나 종중 유사단체의 소유일 가능성도 충분한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4, 6, 10, 12,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㉔ 1980년대 각 E씨세사집이나 E씨대동보에 의하면 I의 아들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자인 J를 시조로 하는 원고 외에, 2자 Q을 시조로 하는 AC종중과 3자 V을 시조로 하는 AD종중이 있는데, AD종중도 마찬가지로 K리에서 세거한 점, ㉕ AD종원인 AF, AG는 K리에 소재한 다른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사정을 받기도 하였고, AF은 K리에 있는 X, P, Y의 묘소 관리와 그 봉제사를 담당하기 위해 조직된 AB종약계의 1918년도 종약입의의 좌목(座目)에 문장(門長)으로 기재되기도 한 점, ㉖ AD종중은 원고 종중회의 및 J 종약계에도 지속적으

로 참석하는 등 종중으로서의 조직과 실체를 유지해 왔고, 2002. 12. 1.자 원고 종중의 총회 결의 시에도 AD종중까지 통합한다는 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㉔ 을 16, 17, 18, 19,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AH, AI, AJ은 X의 후손인 AK이 사정을 받은 후 1981. 12. 24.경 'C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한편 AL의 토지는 1927. 5. 13.경 AM, AN, AO, AP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81. 6. 22.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AQ 전 2644㎡와 마찬가지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C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AN, AP는 원고가 아닌 AD종중의 종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리 일대에 있는 토지는 반드시 원고 종중이 아니라도 AD종중 기타 다른 종중이나 단체의 구성원이 사정을 받고, 이후 위 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C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C종중'이 곧바로 원고 종중과 동일하다거나, 어떤 종중이나 단체가 'C종중'이라는 명칭으로 K리 일대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반드시 원고 종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 갑 1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원들이나 그 선대의 분묘는 AE이나 AR, 원주시 AS 등에 분포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선대조 분묘가 조성되었거나, 위 각 토지가 원고 종중의 위토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없고, 나아가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일부가 X 등 선대의 분묘 소재지와 인접하고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가 원고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45076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어떤 경위로 'C종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는지

그 경위를 명확하게 해명하고 있지 않는바, 위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 사용 현황, 각 토지에 대한 도지 수납 및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 위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 보유 상황 등 통상적으로 종중이 소유, 관리해 왔음을 나타내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위 각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원주시 AI 답 10m^2
2. 원주시 AJ 답 109m^2
3. 원주시 AT 답 2734.7m^2
4. 원주시 AH 답 81m^2
5. 원주시 AQ 전 2644m^2

- 이상-